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선정기준 및 증빙서류 목록(18년 1월 기준) 표에 제시된 '●소득 및 연령기준'과 '■기타 선정기준'이 동시에 부합되어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함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함	
--	--

연번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주의사항
		소득 및 연령기준(●)과 기타선정기준(■)	필요서류 (기본 구비서류 및 기타 선정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포함)	
1	아동 정서발달 서비스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만8세(2010년생)~만12세이하(2006년생) 아동 (*연령 : 2006.01.01.~ 2010.12.31.) ※ 중복수혜불가 :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기타 선정기준 -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아동 등)으로 아동정서발달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가 추천 의뢰하여 학교장("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학교장,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장)추천서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⑤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⑥-1. 학교장("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학교장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장) 추천서 ⑥-2.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⑥-1과 ⑥-2 중 해당하는 한 가지를 제출하면 됨 ※ 추천서 "사업별서식 제18호" 활용 권고	"자격기본법"에 의한 '방과후지도' 관련 만간자격증 소지자의 추천서는 인정될 수 없음
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0세 ~ 만18세이하(2000년생) 아동 (*연령 : 2000.01.01. ~) ※ 중복수혜불가 :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사회성증진을 위한 또래교실, 발달재활서비스, 참좋은카드(인천시교육청), 자연야생발달사업(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기타 선정기준 - 문제행동위험군 아동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 ➡ 추천자가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청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 만14세 미만 신청자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만14세이상~만18세이하 신청자 ◦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문의) ⑤-1. 문제행동위험군과 관련하여 다음 중 택1하여 제출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임상심리사 소견서와 임상심리사 자격증 사본 -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사본	



연도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주의사항
		소득 및 연령기준(●)과 기타선정기준(■)	필요서류 (기본 구비서류 및 기타 선정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포함)	
			⑤-2.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⑤-3.문제행동위험군과 관련하여 다 음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부터 받은 추천서와 절단점 이상의 심층사정평가도구 결과 서 함께 제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 치원장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검사 결과지 동봉 필수	⑤-1, ⑤-2, ⑤-3 중 해당하 는 한 가지를 제출하면 됨 ※ 추천서 “사업별서식 제18호” 활용 권고 이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참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평정척도 RCMAS(아동불안척도) ESI(조기정신증 검사) SCT(문장완성검사) SDQ-Kr(강점·난점 설문자 자기보고형, 부모·교사 보고형) 한국판 CBCL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 1.5-5, 6-18) KPI-C(한국아동인성평가) MMPI(다면적 인성검사) K-VMSC(한국웍슬러 아동지능검사) K-YSR(청소년행동평가척도자기보고용) SCL-90-R(간이정신진단검사) 등 ※ 「정신건강사업안내」 참고	
3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단, 생애최초 신청자 우선선정) ※요양급여대상자 & 병원입원 및 진료대상 ➔ 동시간대 서비스 이용불가 ■ 기타 선정기준(연령기준 상이) ①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소득기준이 부합하면서 기타 선정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대상자 는 탄력적 으로 연령 적용. 최소 만 55세 (1963년생) 이상 (*연령 : ~1963.12.31.)



연도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주의사항
		소득 및 연령기준(●)과 기타선정기준(■)	필요서류 (기본 구비서류 및 기타 선정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포함)	
		만 60세(1958년생) 이상인 자 (*연령 : ~ 1958.12.31.)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 (연령기준없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연령기준없음)	기준 ㉠에 해당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 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기준이 부합하면서 기타 선정 기준 ㉠ 또는 ㉡에 해당 ◦만14세이상~만19세미만은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문의) ◦만19세이상은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소득기준에 부합한 경우, 다음 중 택 1하여 제출 - 기타 선정기준 ㉠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 전 중 택 1하여 제출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 기타 선정기준 ㉡에 해당하는 자 는 장애인등록증(지체 또는 뇌병변) - 기타 선정기준 ㉡에 해당하는 자 는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 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 (질병분류 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만75세이상인 경우, 이용자 희망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가능
4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소득기준(연령기준 없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기타 선정기준 ㉠정신장애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또 는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 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한 자는 퇴 원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신청가능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만14세미만 신청자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 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만14세이상~만19세미만 신청자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문의) -만19세이상 신청자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 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기준이 부합한 경우, 다음 중 택 1하여 제출 -기타 선정기준 ㉠에 해당하는 자 는 장애인등록증(정신장애) 제출 -기타 선정기준 ㉡에 해당하는 자	만14세이상인 경우, 이용자 희망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가능



연번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주의사항
		소득 및 연령기준(●)과 기타선정기준(■)	필요서류 (기본 구비서류 및 기타 선정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포함)	
			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 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연령기준(소득기준 없음) -만 24세(1994년생) 이하 (*연령 : 1994.01.01.~) ※만6세 미만의 지체·뇌병변장애가 예견되 는 아동도 인정 (해당 내용에 대한 <u>의사소견서</u> 제출) ※정신적 장애이면서 지체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자도 인정 (<u>장애인등록증</u> 제출 - 부장애 : 지체/뇌병변)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만14세미만 신청자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 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만14세이상~만19세미만 신청자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문의) -만19세이상 신청자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 인정보 제공동의서 ⑤-1.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인등록증(지 체/뇌병변) 제출 ⑤-2.척수장애 또는 근이영양증을 가진 경우 척수장애 또는 근이영양증에 대한 의사진단 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⑤-1, ⑤-2 중 해당하는 한 가지를 제출하면 됨 ※만6세 미만이면서 지체·뇌병변장애 가 예견되는 경우 의사진단서 제출 ※정신적장애이면서 지체·뇌병변장 애 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제출(부장애 : 지 체/뇌병변)	
5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기타 선정기준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아동 -척수장애 또는 근이영양증(근디스트로 피/muscular dystrophy)을 가진 아동		
6	장애인 재활승마 서비스	●소득 및 연령기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6세(2012년생)이상인 자 (*연령 : ~ 2012.12.31.) ■ 기타 선정기준 -등록장애인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만14세미만 신청자	만75세이상인 경우, 이용자 희망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가능



연번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주의사항
		소득 및 연령기준(●)과 기타선정기준(■)	필요서류 (기본 구비서류 및 기타 선정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포함)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만14세이상~만19세미만 신청자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문의) -만19세이상 신청자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⑤장애인등록증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만14세미만 신청자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만14세이상~만15세이하 신청자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문의)	
7	아동청소년 Dream up, 진로탐색 서비스	●소득 및 연령기준(기타 선정기준 없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만7세(2011년생)~만15세(2003년생) 이하 아동·청소년 (*연령 : 2003.01.01.~2011.12.31.)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만14세미만 신청자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만14세이상~만15세이하 신청자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문의)	
8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소득 및 연령기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13세(2005년생) 이상인 자 (*연령 : ~ 2005.12.31.) ■ 기타 선정기준 -등록장애인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만13세인 신청자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만14세이상~만19세미만 신청자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문의) -만19세이상 신청자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⑤장애인등록증	만75세이상인 경우, 이용자 희망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가능
9	노인수중 운동교실	●소득 및 연령기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의 만65세(1953년생)이상 노인(*연령 : ~1953.12.31.)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만75세이상인 경우, 이용자 희망시



연도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주의사항
		소득 및 연령기준(●)과 기타선정기준(■)	필요서류 (기본 구비서류 및 기타 선정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포함)	
		※요양급여대상자 & 병원입원 및 진료대상 ➡ 동시간대 서비스 이용불가 ※우선순위 :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②만성질환자 ③독거노인, 노인세대	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 인정보 제공동의서 ⑤우선순위선정에 따른 필요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 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만성질환자 : 발급일로부터 6개 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 서, 처방전 중 택 1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 증, 폐쇄성 폐질환, 구강질환, 빈혈, 안질환, 이비인후질환, 골 관절염 및 골다공증 등) -독거노인, 노인세대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u>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가능</u>
10	장애아동 학습지원 서비스	●소득 및 연령기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만5세(2013 년생)~만18세(2000년생) 이하인 자 (*연령 : 2000.01.01.~2013.12.31.) ■기타 선정기준 -등록장애인 -특수교육대상아동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특수학 급에 입급되어 있는 학생도 가능)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만14세미만 신청자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 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만14세이상~만18세이하 신청자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문의) ⑤다음 중 택 1하여 제출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특수교육대상아동 : 다음 중 택1 ■특수교육대상아동임을 증빙하 는 학교장 추천서 ■학교장 발행 '특수학급 입급확 인서' ■교육청 발행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결과 통보서'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확인서 ■유치원·어린이집 내 '장애아동 합반' 재원증명서 ■'장애아통합반' 대기자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17. 8. 추가)	



연번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주의사항
		소득 및 연령기준(●)과 기타선정기준(■)	필요서류 (기본 구비서류 및 기타 선정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포함)	
11	성인심리 상담서비스	●소득 및 연령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만 18세(2000년생) 이상인 자 (*연령 : ~2000.12.31.)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정, 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 ②지역 내 유관기관(동 주민센터 등)에서 의뢰되어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만18세 신청자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문의) -만19세이상 신청자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⑤우선순위선정에 따른 필요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정	만75세이상인 경우, 이용자 희망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가정 :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관련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유관 기관(동 주민센터 등) 의뢰서 ※ 의뢰서 "사업별서식 제19호" 활용 권고	
12	오감쑥쑥 서비스	●소득 및 연령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4세(2014년생)~만6세(2012년생) 이하 아동 (*연령 : 2012.01.01.~ 2014.12.31.) ※중복수혜불가 : 발달재활서비스, 꼬마작가 만들기 프로젝트(중구,동구)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⑤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이용권자 : 아동
13	부모유아 관계증진 서비스	●소득(신청권자 연령기준 없음)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복수혜불가 : 좋은 부모를 위한 육아토탈케어서비스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⑤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서비스대상이 유아 1인인 경우, 부모 중 1명이 신청하고 서비스에 참여 ※서비스대상이 유아 2인인 경우, 부모 2명이 각각 신청하고 서비스에 참여	이용권자 : 부모 만75세이상인 경우, 이용자 희망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가능
		■ 기타 선정기준 -만2세(2016년생)~만3세(2015년생)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자녀연령 : 2015.01.01.~2016.12.31.)		



연번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주의사항
		소득 및 연령기준(●)과 기타선정기준(■)	필요서류 (기본 구비서류 및 기타 선정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포함)	
			(서비스대상이 3인 이상이거나, 2인 이상인데 한부모가정인 경우 조부모가 신청하고 참여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수)	
14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	●소득 및 연령기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의 만65세(1953년생) 이상 노인(*연령 ~1953.12.31.)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요양급여대상자 & 병원입원 및 진료대상자 → 동시간대 서비스 이용불가 ※중복수혜불가 :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남구), 브레인UP!노인안자가능향상서비스(동구)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75세이상인 경우, 이용자 희망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가능
15	[18년 신규] 나를 찾는 5060	●소득 및 연령기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의 만50세(1968년생)이상~만64세(1954년생)이하인 자 (*연령:1954.01.01.~1968.12.31.) ※우선순위: 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⑤우선순위선정에 따른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16	섬마을 행복나눔 서비스 (웅진군)	●소득 및 연령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7세(2011년생)~만18세(2000년생) 이하 아동 (*연령 : 2000.01.01. ~ 2011.12.31.) ※우선순위 :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한부모가정아동, 다문화가정아동, 장애아동, 가정위탁아동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만14세미만 신청자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만14세이상~만18세이하 신청자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문의) ⑤우선순위선정에 따른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아동 : 한부모가정 증빙서류	



연번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주의사항
		소득 및 연령기준(●)과 기타선정기준(■)	필요서류 (기본 구비서류 및 기타 선정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포함)	
			-다문화가족아동 :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가정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7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남구)	●소득 및 연령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65세(1953년 생) 이상인 노인 (*연령~1953.12.31.)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요양급여대상자 & 병원입원 및 진료대상자 ➔ 동시간대 서비스 이용불가 ※“정신건강복지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정 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자는 제외 ※중복수혜불가 : 치매예방인지건강프로젝트, 브레인UP!노인안 치가능향상서비스(동구)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 인정보 제공동의서 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⑤-2. 노인자살위험검사 결과지 ⑤-3. 보건소 소속 방문건강관리사 추천서 ⑤-1, ⑤-2, ⑤-3 중 해당하 는 한 가지를 제출하면 됨	만75세이상인 경우, 이용자 희망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가능
18	도시지역 영아와 부모를 위한 가족지원 예술교육서비스 (용진군, 강화군)	●소득(신청권자 연령기준 없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용진군 우선순위 :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강화군 우선순위 : 36개월이하 영유아 가정 ■ 기타 선정기준 -6개월~만4세이하(2014년생) 영유아 를 양육하는 부모 (*자녀연령 : 2014.01.01.~생후6개월)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⑤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⑥우선순위선정에 따른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자녀가 2인이상이면서 한부모가정이 기 때문에 조부모가 이용권을 취득하 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이용권자 : 부모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부모 또는 조 부모가 별도로 신청해야 함
19	즐거움아침, 행복한학교 (중구, 동구, 남구, 서구)	●소득 및 연령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6세(2012 년생)~만15세(2003년생) 이하의 초·중학 교 재학생 (*연령 : 2003.01.01. ~ 2012.12.31.) ※우선순위 : ①한부모가정, 청소년가장가정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연번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주의사항
		소득 및 연령기준(●)과 기타선정기준(■)	필요서류 (기본 구비서류 및 기타 선정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포함)	
		②기초생활수급자 ③차상위계층	-만14세미만 신청자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 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만14세이상~만15세이하 신청자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문의) ⑤초·중학교 재학생 : 학생증 및 재학증명서 ⑥우선순위선정에 따른 필요서류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20	도시지역 어르신 삶의 질 향진 증진서비스 (웅진군,강화군)	●소득 및 연령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65세(1953년 생)이상 노인(*연령 : ~ 1953.12.31.)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요양급여대상자 & 병원입원 및 진료대상자 ⇒ 동시간대 서비스 이용불가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화를 위한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만75세이상인 경우, 이용자 희망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가능
21	꼬마작가 만들기 프로젝트 (중구,동구)	●소득 및 연령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4세(2014년 생)~만12세(2006년생) 이하 아동 (*연령 : 2006.01.01. ~ 2014.12.31.) ※중복수혜불가 : 오감쑥쑥서비스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 급(재발급) 신청서 ⑤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 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22	섬마을 꼬마작가 서비스 (웅진군,강화군)	●소득 및 연령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3세(2015 년생)~만9세(2009년생) 이하 아동 (*연령 : 2009.01.01. ~ 2015.12.31.)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 급(재발급) 신청서 ⑤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 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23	좋은 부모를 위한	●소득기준(신청권자 연령기준 없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가정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이용권자 : 부모



연도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주의사항
		소득 및 연령기준(●)과 기타선정기준(■)	필요서류 (기본 구비서류 및 기타 선정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포함)	
	육아토탈케어 서비스 (남구)	※중복수혜불가 : 부모유아관계증진서비스 ※우선순위 : ①기초생활수급자 ②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맞벌이 가정 등과 같은 육아취약가정 ③지역 내 유관기관(동 주민센터 등)에서 의 뢰되어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준비 ⑤-1.임신 7개월 이상인 자 : 산모수첩 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⑤-2.만2세이상~만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⑤-1, ⑤-2 중 해당하는 한 가지를 제출하면 됨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부모 또는 조 부모가 별도로 신청해야 함 만75세이상인 경우, 이용자 희망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가능
		■ 기타 선정기준(택 1) ①임신 7개월 이상인 자 ②만2세이상~만12세이하 자녀를 양육 하는 부모 (*자녀연령 : 2006.01.01. ~2016.12.31.)	⑥우선순위선정에 따른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육아취약가정 : 해당 관련 증명서 -지역내 유관기관 의뢰 가정 : 의뢰서 ※자녀가 2인이상이면서 한부모가정이 기 때문에 조부모가 이용권을 취득하 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24	[18년 신규] 사회성증진을 위한 또래교실 (부평구)	●소득 및 연령기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의 만5세(2013년 생)~만8세(2010년생) 이하 아동 (*연령 : 2010.01.01. ~ 2013.12.31.) ※중복수혜불가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 스, 발달재활서비스, 참좋은카드, 자녀언어 발달사업 ※우선순위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 기타 선정기준(택 1) ①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진단서 또 는 장애인등록증(발달장애) 소지자(의 사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증빙) ②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로부터 발달검사·사회성검 사를 받아 사회성발달지원 소견을 받 은 아동(소견서 원본, 임상심리사 자 격증 사본 증빙) ③ 다음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부터 사회성지원이 필요하다는 내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①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재발급) 신청서 ②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⑤-1. ‘선정기준①’과 관련하여 다음 중 택 1하여 제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 진단서 (발달장애) -장애인등록증(발달장애) ⑤-2. ‘선정기준②’와 관련하여 다음 중 택 1하여 제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임상심리사 소 견서(사회성발달 지원원본과 자격증 사본 ⑤-3. ‘선정기준③’과 관련하여 다음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6개	⑤-3의 경 우, “자격기 본법”에 의 한 ‘방과후 지도’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추천서는 인정될 수 없음에 유 의



연번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주의사항
		소득 및 연령기준(●)과 기타선정기준(■)	필요서류 (기본 구비서류 및 기타 선정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포함)	
		용의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장 ③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월이내 발급받은 추천서 제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⑤-1, ⑤-2, ⑤-3 중 해당하는 한 가지를 제출하면 됨 ※ 추천서 “사업별서식 제18호” 활용 권고 ⑥ 우선순위에 선정에 따른 필요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25	[18년 신규] 정리수납 멘토링지원서비스(동구)	● 소득 및 연령기준(기타선정기준 없음)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의 만18세(2000년생)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자녀연령 : 2000.12.31.~)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한 가정당 1인 대표로 신청할 것 (2인이상 신청불가) 만 75세 이상인 경우, 이용자 희망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가능

□ 읍·면·동 업무담당자 유의사항

-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공통서식 제5호)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공통서식 제21호)를 받을 것
- ‘사회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교육용 영상 시청 안내 (‘18 추가)

□ 서비스 연령기준 : 사업별 상이(출생연도 기준으로 판정)

(예시) 만4~만7세 대상 아동 사업의 경우, 2011.1.1.~2014.12.31 출생자 모두 포함

※ 4장 ‘적용 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참고

